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5.

영 광 군 수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061-350-57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건물번호 부여 내역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전남 영광군 염산면 축동리 952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덕로4길 3-13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17-3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2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6	전남 영광군 군남면 옥창로 338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128-1	전남 영광군 백수읍 약수길 236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42-4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 1325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386	전남 영광군 법성면 입덕길1길 80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69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304-20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계리 420-4	전남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 378-4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222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7-34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64-12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길1길 50-29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736-8, 9	전남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1길 61-45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838-4	전남 영광군 군남면 옥창로 173-20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55-4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48-2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869-2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길 103-6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139-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로 68	22. 4. 5.	건물신축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전남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 647, 651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샘목로 745-1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리 781	전남 영광군 군서면 삼산로 126-47	22. 4. 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1097-38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474-90	22. 4. 5.	건물신축
- 이하 여백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소하천구역,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2- 41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 일

영 광 군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주)영광*****		
	대표자 (성 명)	김**	주 소	영광군 흥농읍 흥농로
소하천명		마당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872-3번지 외 1필지		
	면 적	1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 간	2022. 04. 01. ~ 영구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관리도로 진출입로(PC암거)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분양공고

영광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모악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중 잔여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영 광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488번지 일원 (종전 지번 : 모악리 산45-2)
3. 사업 시행자 : 영광군수
4. 분양내역

용도	평형	필지수	필지별 면적	분양가	분양방법	신청기간	추첨 및 발표	계약기간
단독 주택	150평형	15	분양계획서 참조	분양계획서 참조	필지지정 신청 및 경합시 추첨	2022. 4. 4 ~ 4. 18(15일간)	2022. 4. 21 14:00 (추후 변경가능)	별도통보
	200평형	18						

가. 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함 (세대주만 신청가능)

나. 추첨 및 발표 일자는 추후 변경가능

5. 분양신청 접수장소

가. 장 소 : 영광군청 건설과 농촌개발팀

나.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한 것)
- 대리신청 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연락처 : 061-350-5194

라. 방 법 : 방문접수

마. 접수시간 : 10:00 ~ 17: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

6.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분양공고일 기준)

가. 1순위 : 불갑면 모악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또는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 세대주

나. 2순위 :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다. 3순위 : 기타지역 거주하는 세대주

※ 도시민이란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를 말한다.

7. 분양자 선정방법

- 가. 필지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 추첨 없이 분양자 결정
- 나. 경합이 있는 필지는 동일순위 신청자별 추첨에 의하며 선순위에서 미달된 경우 차순위 신청자 에게 분양
- 다. 분양자가 계약포기 할 경우 당해 필지 후순위자 순으로 분양자 결정
- 라. 경합에 의한 추첨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석하여 추첨

8.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금 액	분양가 10%	분양가 60%	분양가 30%	
납부시기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후 6개월 이내	건축 준공 후	

9. 주택건설 조건

- 가. 분양신청자, 용지분양 계약자, 건축주 명의를 동일하여야 한다
- 나. 주택 건축면적은 85㎡ 이상으로 한다.
- 다. 건축 설계시 영광군 경관위원회 자문을 득해야 한다.
- 라. 계약후 1년 이내 건축 착공
- 마. 건물은 2층 이하, 지면으로부터 10m 이하, 경사지붕으로 건축
- 바. 담장은 설치하지 않고 오픈하거나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 권장
- 사. 기반시설 훼손방지를 위해 건축시 궤도형 장비사용 금지
- 아. 건축 준공후 주민등록을 영광군으로 이전하여 정착, 거주

10. 분양추첨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 가. 분양신청자가 추첨에 불응하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신청서 등은 정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나. 분양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등 관련법규 등에 대한 사항, 현장여건, 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은 분양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공고일 현재 형태와 여건으로 분양가격이 차등 적용되어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 하기 바람.
- 라. 분양가격, 단지배치도, 기타 분양 및 계약관련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분양계획서를 참고하기 바람.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제8조제2항(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22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전화) 061-350-5252/ FAX) 061-350-5360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담당자(전화 : 061-350-52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u></p>